

학술지 연구윤리세칙

제정 2015. 8.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부동산분석」 등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이 세칙은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3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중복게재·재투고 등을 말하며, 이하 각 부정행위의 정의는 이하 각 조에 따른다.

제4조(위조, 변조)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표절)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아이디어), 독특한 표현(단어, 어구, 절, 문장, 그래프, 도표, 사진 등), 연구 착상(가설)이나 방법(분석 체계 또는 논리), 이론 및 연구결과, 데이터, 조사자료 등이다.
2. 비록 자신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된다.
3.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데이터, 문장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를 해야 한다.

4. 출처표시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정당한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한다.
5.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제6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중복게재) ① “중복게재”는 투고자 본인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출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투고(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본 학술지에 투고, 게재할 수 없다.
 2. 교내학술지 등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하여 본 학술지에 투고,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그 수정·보완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연구의 심화 및 적용 과정에서 본인의 선행 연구물을 투고할 수 있으나, 이때 활용한 자신의 선행 연구물을 출처표시 등을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
 4.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과 연구보고서 등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5.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② 다음에 예시하는 유형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용된 선행 저작물의 존재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출판되지 않은 학위논문을 논문형태로 투고하는 행위
 2. 용역보고서, 정책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에 따라 작성된 저술을 별도의 논문형태로 투고하는 행위
 3. 이미 출간된 투고자 본인의 연구보고서를 별도의 논문형태로 투고하는 경우
 4. 워킹 페이퍼(working paper) 및 이에 준하는 연구자료를 논문으로 심화시켜 투고하는 경우

제8조(재투고) ① “재투고”는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을 다시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해 게재불가 판단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항목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자료
4. 연구 범위
5. 연구 결과
6. 논리전개방식

제9조(그 밖의 부정행위) ①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②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 ③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당한 연구 행위

제10조(심의) 연구윤리 위반여부 및 경중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3장 연구윤리조사위원회

제11조(구성) ① 연구윤리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장 1인을 포함한 조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장은 편집위원장 중에서 선임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은 편집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임명하며,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분의 1이상 위촉한다.
-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에 포함할 수 없다.
- ⑤ 조사위원이 부정행위와 관계되었거나 관계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해촉할 수 있다.
- ⑥ 간사는 편집위원회 간사가 한다.

제12조(기능)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②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를 관한 사항
- ③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 ④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13조(활동기한) 조사위원회는 제23조의 편집위원회의 소집명령에 따라 구성된 때로부터 본조사의 종결 시까지 활동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 의결) ①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조사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조사비) 조사위원회에 참석한 원외 조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제보 및 권리보호

제16조(제보)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조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7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②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①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조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조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가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8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조사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조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와 기준

제19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지 또는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와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대내외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예비조사자나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입증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제22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②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 또는 제보접수일 익일까지 2인 이내의 예비조사자를 지정한다.
- ③ 예비조사자는 다음 각호를 조사하여 예비조사 착수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정행위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3.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④ 예비조사 결과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당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에 대한 설명
 3. 본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권고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부정행위 관련 증거 자료
- ⑤ 예비조사결과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5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⑥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⑦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본조사) ① 편집위원회는 제22조의 예비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의결하고, 조사위원회의 소집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소집된 조사위원회는 소집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조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③ 조사위원회는 본조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자료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제26조의 제재조치를 편집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10일 이내에 제보내용, 관련증거, 진술서, 조사결과, 제재조치 건의 등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0일을 넘지 않는다.
- 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판정) ①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본조사 종결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판정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2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 ② 재심을 결정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6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정되고 편집위원회가 확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① 게재된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 ②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 금지(경중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함)
- ③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 및 차기 학술지에 공지
- ④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